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448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김종성, 양창길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C와 중국 무역사업상 알게 된 사이로, 소외 C은 원고에게 중국 수출입 통관을 위해 급전 형태로 금전을 대여하여 갔는데, 2019. 10. 20. 기준 대여금이 157,000,000원이었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C은 2020. 3. 5.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2. 사해행위에 관하여

가. 소외 C은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금 157,000,000원을 2020. 4. 5.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474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은 C에게 2020. 6. 3. 송달, 같은 달 18일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지급명령결정문)

나. C은 차용증 작성 시 차용증 제8조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C 소유의 개인재산(승용차, 주거지 주택)과 회사법인 재산(회사임대보증금, 회사차량, 회사법인통장 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 C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는 C이 거주 및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2020. 6. 1. 가압류하여 대여금 독촉을 하였으나 C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라. 원고는 C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리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을 하지 않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2021. 5월 C이 석방이 되었고,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을 한 F과 5. 11. 원고 사무실에 찾아왔고, 원고가 대여금을 언제 변제할 수 있냐고 묻자 C은 배우자와 이혼 직전이라며 돈도 없고 당장에 갚을 수 없고 일용직이라도 해서 변제를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C에게 부동산 경매 진행 및 C 소유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 및 경매 하겠다고 하자, 차는 팔아야 1000만원도 안 나오고,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라 경매하기 힘들 거라면서 별면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자, 원고는 여하튼 경매 및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C은 돌아갔습니다.

바. 다음날 원고는 부동산 경매신청을 진행하였고, C 소유의 이 사건 별지 목록 벤츠 자동차에 대해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08043호로 압류 신청하여 5. 18. 같은 법원 G로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유채동산압류 신청 서류, 갑 제5호증 자동차강제경매 결정문)

사. 이후 원고는 위 자동차경매를 통해 대여금의 일부라도(위 차량의 중고시세는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음)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원고가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C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신청 당일인 5. 14. 위 차량을 피고(C의 처남으로 경찰 고소 후 알게 되었습니다.)명의로 이전하였습다.(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안 원고는 위 차량을 진정하게 양도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C 주거지 주차장을 2021. 5. 21., 5. 24. 각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은 여전히 C 주소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앞 유리에도 C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여전히 C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2021. 5. 21., 갑 제8호증 2021. 5. 24. C 주소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각 사진)

자. 이는 C이 자동차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고자 의도적으로 친인척인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명의만을 이전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원고가 C에게 자동차 명의이전을 따지자 다른 채권자(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갑 제 제9호증 녹취록)

차. 이에 원고는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였고, C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처남인 채무자에게 명의만 이전하여 두었다는 F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사건은 현재 서울관악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갑 제10호증 녹취록)

3. 결론

위와 같이 C과 피고간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은 원고를 채권을 면탈하고자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1. 등 록 번 호 :

제 원 관 리 번 호 : 008-2-00051-0000-1216

차 명 : E220 d

차 종 : 승용 중형

차 대 번 호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654 920 / 2017년식

사 용 본 거 지(차고지) : 서울 송파구

등 록 연 월 일 : 2016. 12. 6.

